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연 월 일	20 . . .

법 제 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 10. 2. 「공소청법」이 제정·시행되고, 「검찰청법」이 폐지되는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 예정임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9. 14. ~ 9.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영장심의위원회 규칙」의 개정)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 제2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25조제1항 및 제29조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광역공소청장”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에”를 “광역공소청에”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해당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장이 해당 광역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고등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을 “광역공소청장은 해당 광역공소청 소속 형사법무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검찰청 소속”을 “공소청 소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이하 “관할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이하 “관할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고등검찰청”을 각각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검찰청의”를 각각 “공소청의”로 하고, 제16조제1항 중 “검찰청에”를 “공소청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기호(○)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기호(○)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같은 서식 중 “수사기관”을 “수사기관이나,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기호(○)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기호(○)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기호(○) 중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8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기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검찰처분”을 “검사처분”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작성자 ○○지방검찰청”을 “작성자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확인자 ○○지방검찰청검사장”을 “확인자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기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조(「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기호(○) 중 “○○○검찰청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수 신 : ○○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수 신 : ○○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앞면 기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기호(○)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호(○)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 지방검찰청”을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기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서식 기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기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기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기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기호(○)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검찰사건번호”를 “사건번호”로 한다.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일련 번호	진 단 내 용	해당여부	
1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다.	예 []	아니요 []
2	○○광역공소청 영장심의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다른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요 []
3	심의위원회의 직무 관련 정보나 심의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의 변동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요 []
※ “예 “라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직무윤리 서약서

성명:

위 본인은 ○○광역공소청 영장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촉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의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업무 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을 것
2.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 심의위원회에서 본인이나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등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9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것
5.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또는 청탁·알선 등을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6.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 약 서

○○광역공소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위 본인은 ○○광역공소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서약합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공소청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5. 해당 안건의 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고발인(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고발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6. 제5호의 사람과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7. 제5호의 사람의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소속인 경우 해당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인을 포함한다) 또는 보조인이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8. 제5호의 사람 또는 해당 안건의 수사나 영장의 신청·청구 여부의 결정에 참여한 사람과 친분관계·대립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장 심 의 위 원 회 심 의 신 청 철회서

수신: ○○광역공소청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피의자 ○○○ 외 ○명에 대한 ○○○○○○
○○○○○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신청을
철회합니다.

사건 및 영장	피 의 자	성명: 생년월일:
	경찰 사건번호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죄 명	
	영장의 종류	
심의신청인		
심의신청 일시		
심의신청 철회 일시		

신청 철회인 ○○경찰서 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 g / m²) 또는 중질지(80 g / m²)]

영 장 심 의 위 원 회 심 의 결 과 통 보

수신: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 지청장), ○○경찰서장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피의자 ○○○○에 대한 □□(영장/허가서/강제 처분)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영장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 합니다.

사건 및 영장	피 의 자	성명: 생년월일:
	사 건 번 호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 제0000-000000호(영장 접수 번호)
	죄 명	
심의 결과 (심의의견별 심의위원 수)		영장 청구 적정 / 영장 청구 부적정 (적정: 00명, 부적정: 00명)

○○광역공소청장 (서명 또는 인)

보상금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	------	------	----

신청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장(소재지)		
	직업(직위)		

신청 내용	사건 개요
	사건 처리 결과
	보상금 지급 제한사유가 있는지
	신고 관련 별도의 보상금·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했는지
	신청인 의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지급을 신청했음을 확인합니다.

사유 :

확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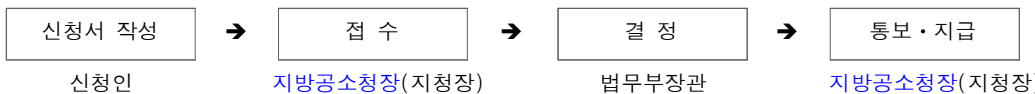
(기관명)장

인

익명·가명신청
검사 승인

안내사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
려는 사람은 같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공 로 조 서

대 상 자	주소(또는 거소)		직업	
	성명		생년월일	
사 건 번 호	○○지방공소청(○○지청) 형제 호		피 의 자 (피 고 인)	
신고·고소· 고 발 일 시			신고접수관서	
신 고 접 수 자				
검 사 처 분	처 분 일 자		몰수예상물품 및 추 징 예 산 금 액	
	처 분 내 용	구공판/구약식/기소유예/기타(구형)		
재 판 선 고	선 고 일 자		법 원	
	형 기		벌 금	
	물 수 품		추 징 금	
공 로 내 용				
의 견	보상금		원 지급	

년 월 일

작성자 ○○지방공소청(○○지청) 검사 인

확인자 ○○지방공소청장(○○지청장) 인

검 찰 총 장 의 견	
----------------	--

법무부장관 귀하

보상금 지급결정서

1.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또는 거소)	

2. 대상사건

사건번호	○○지방공소청(○○지청) 형제 호	피의자 (피고인)	
공로내용			

3. 결정내용

주 문	대상자에게 보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이 유	

위와 같이 결정함.

년 월 일

법무부장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범죄신고자 등 보좌인

[] 지정

[] 취소

[] 교체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피보좌인(가명)			
현 보 좌 인			
보 좌 인	성명	직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피 보좌인과의 관계	신변안전조치 해당여부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사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범죄신고자 등 보좌인의 ([]지정, []취소, []교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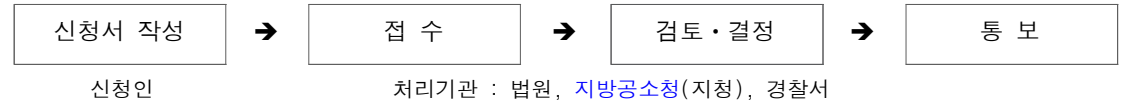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귀하

작성방법

- 피보좌인 또는 신청인이 신원관리카드 작성대장자인 경우에는 성명은 신원관리카드상의 가명으로 기재하고, 주소는 기재를 생략함
- 수신은 재판장 ○○○, ○○○공소청장(지청장), ○○○경찰서장으로 기재함

처리절차



[별지 제4호서식]

수 신 : ○○공소청장(지청장)

제 목 :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보고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이를 보고합니다.

사 건 번 호				
신원관리카드 관 리 번 호				
대 상 자 인 적 사 항	성 명(가명)		신 분	
	신변안전조치 해 당 여 부		피 의 자 와 의 관 계	
미 기 재 원 인	대상자 ○○○(법정대리인 ○○○)의 신청, 직권			
서 류 명 및 미 기 재 내 용				
미 기 재 사 유				
년 월 일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최 초 작 성 기 관 명		
사건번호	사 경	
	공 소 청	
	법 원	
관 리 번 호		년 호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

○○○ 지방공소청(지청)

(뒷 면)

신원관리카드 송부·열람·관리자등 현황								
카드 송부	송 부 일 자	송 부 자			접 수 일 자	접 수 자		
		소 속	직 위 (직급)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성명
열람	열 람 일 자	열 람 자			열 람 사 유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관리 검사 지정	지 정 일 자				관 리 검 사			
범죄 신고 자등 면담 신청	신 청 일 자	신 청 자			신 청 사 유		면담 일자	
		성 명	범죄신고자등 (또는 피고인) 과 의 관 계					
주요 변동 상황 통지	통 지 일 자	담 당 자			통 지 내 용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 ○ 법원

수 신 : ○○지방공소청장(지청장)

제 목 : 범죄신고자등 보좌인 지정(취소·교체)통보서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 등의 보좌인을 지정(취소·교체)하였
기에 통보합니다.

사건 번호	공소청	법원
피보좌인		
현보좌인		
결 형	지정·취소·교체	
보좌인	성명	직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피보좌인과의 관계	신변안전조치 해당여부
	신청인과의 관계	
지정(취소·교체)원인	○○○의 신청, 직권	
사 유		

년 월 일

재판장

인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기관			
대상자(가명)			
보좌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의자(피고인)와의 관계	
신청사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
 카드 열람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공소청장(지청장) 귀하

검사 결정	허가 ㉠	불허가 ㉠
불허가이유		

년 월 일

검사 ○○○ ㉠

범죄신고자 등 면담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대상자(가명)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의자(피고인)와의 관계	
신청사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범죄신고자 등과의 면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공소청장(지청장) 귀하

검사결정	허가 ㉠	불허가 ㉠
불허가이유		

년 월 일

검사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공소청(지청)

범죄신고자등 면담신청통지서

수 신 : 귀하
주 소 :

귀하에 대한 면담신청이 있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사 건 번 호		
대상자(가명)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의자(피고인)와의 관계	
신 청 사 유		

년 월 일

○ ○ 공 소 청

검사 인

[별지 제16호서식]

신변안전조치이행통보서	
수 신 : ○○공소청 검사○○○	
년 월 일 요청한 신변안전조치를 아래와 같이 이행하였기에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신원관리카드 관 리 번 호	
신 변 안 전 조치대상자 (가 명)	
최 초 요 청 (지 시)자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년 월 일	
○○경찰서장 인	

210mm×297mm

구조금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사건번호			
신청인	성명(가명)	생년월일	
	직업	전화번호	
	주소		
	피구조자와의 관계		
신청금액			
신청사유			
증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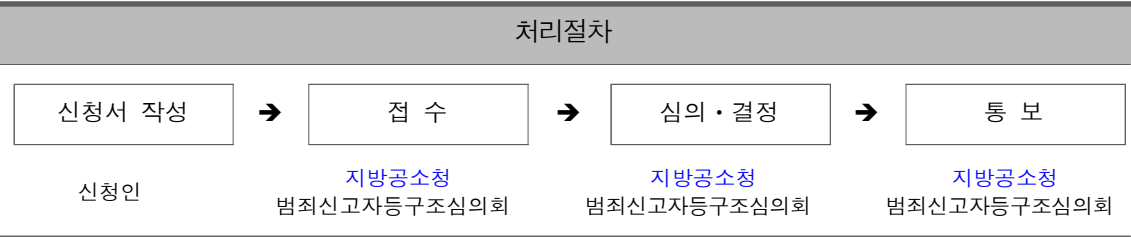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조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공소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 귀하



○○공소청 범죄신고자 등 구조심의회

수신 : ○○공소청 검사 ○○○

제목 : 범죄신고자 등 구조심의결과통보서

년 월 일 ○○○가 신청한 구조금지급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구조결정번호	구심	년	제 호	피구조자(가명)
신 청 인	성 명 (가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피구조자와의 관 계	
	주 소			
신 청	신 청 일 자		신 청 금 액	
구 조 결 정	결 정 일 자		결 정 주 문	
청구 및 지급	결정통보일자		청구일자 및 지 급 일 자	
	지 급 금 액		수 령 인	

○○공소청 범죄신고자 등 구조심의회 위원장 인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08.11.4>

가 구 조 결 정 서

(년 호)

사 건 번 호				
신원관리카드 관 리 번 호				
피 구 조 자	성명(가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주 소			
요 청 검 사				
가 지 급 금 액				
이 유				

일 월 년

○○○공소청 범죄신고자 등 구조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08.11.4>

구조결정서

(년 호)

사 건 번 호				
신원관리카드 관 리 번 호				
신 청 인	성명(가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피구조자와의 관계	
	주 소			
피 구 조 자	성명(가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주 문				
이 유				

년 월 일

○○○공소청 범죄신고자 등 구조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구조결정통지서	
(년 호)	
수 신 : 성명(가명)	
주소	
년 월 일 귀하가 신청한 구조금지급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에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결 정 일 시	
결 정 주 문	○구조금지급신청을 기각한다.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조금 원을 피구조자 ○○○(가명)에게 지급한다.
이 유	
년 월 일	
○○○공소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 위원장 인	

구조금지급청구서

청구인	성명(가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구조결정번호			
결정주문	구조금()원을 피구조자 (가명)에게 지급한다.		
지급방법	계좌입금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	
	직접지급	피구조자 수령() 대리인 수령()	

※ 대리인이 구조금을 수령하려는 경우에는 피구조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해야 합니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가명)

(서명 또는 날인)

○○○지방공소청장 귀하

부 칙

이 규칙은 2026. 10. 2.부터 시행한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후보단의 구성) ① 각 <u>고등검찰청 검사장</u>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u>고등검찰청에</u>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이하 “위원후보“라 한다)로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위원후보는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u>고등검찰청 검사장</u>이 위촉한다. ③ 각 <u>고등검찰청 검사장</u>은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위원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후보단이 특정 직업이나 분야에 편중되어 구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위원후보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각 <u>고등검찰청 검</u>	제3조(후보단의 구성) ① -- <u>광역공소청장</u>----- ----- ----- -- <u>광역공소청에</u> ----- ----- ----- ----- ----- --. ② ----- ----- ----- <u>광역공소청장</u>-----. ③ -- <u>광역공소청장</u>----- ----- ----- ----- ----- -----. 제4조(위원후보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 <u>광역공소청장</u>--

사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하기 전에 위원후보가 될 사람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후보로 위촉해야 한다.

②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한 경우 해당 위원후보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후보 중에서 후보단의 추천을 받아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심의신청이 있을 때마다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원후보 중에서 추천 등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여 위촉한다.

④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

-----.

② -- 광역공소청장-----

-----.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광역공소청장-----.

③ -----

-- 광역공소청장-----
-----.

④ -- 광역공소청장-----

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7조(위원 등의 해촉)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위원후보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7. (생략)

제8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될 수 없다.

1. ~ 3. (생략)

4.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②·③ (생략)

제11조(간사) ① (생략)

-----.

제7조(위원 등의 해촉) -- 광역공소청장-----

-----.

1. ~ 7.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해당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지명한다.

③·④ (생략)

⑤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고등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으로 하여금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의 공정성 등 유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가 검사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할 때 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제13조(심의신청 절차)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7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

1. (생략)

2. 담당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날(담당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

② -----
----- 광역공소청장
이 해당 광역공소청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광역공소청장은 해당 광역공소청 소속 형사법무사무관

-----.

제12조(심의의 공정성 등 유지) -
-- 광역공소청장-----
----- 공소청 소속 ---

-----.

제13조(심의신청 절차)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공소청

3.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공소청

광역공소청(이하 “관할 광
역공소청”

야 한다. 다만, 담당검사와 합의
한 경우 사건기록 등본은 그 일
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4조(심의신청의 철회) ① 사법
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
최일 전날(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까지 관할 고등검찰청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신청 철회
서를 제출하여 심의신청을 철회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심의신청 후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심의대상 영장과 동일한
내용의 영장(범죄사실 또는 영
장에 의한 강제처분의 범위가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담
당검사에게 다시 신청한 경우에
는 심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영
장을 다시 신청할 때 그 신청사
실을 관할 고등검찰청에 통보해
야 한다.

③ (생략)

-----.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심의신청의 철회) ① ----

----- 광역공소청-----

-----.

② ----

-----.

----- 광역공소청-----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심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등) ① 간사는 심의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담당검사가 소속된 <u>검찰청의</u> 장과 위원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신청서 부분 1부, 사건기록 등본 1부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부분 1부를 해당 <u>검찰청에</u> 송부해야 한다. ②·③ (생략) 제25조(심의 결과 통보 등) ① 각 <u>고등검찰청 검사장</u>은 담당검사가 소속된 <u>검찰청의</u> 장과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심의의견별 심의위원수를 통보해야 한다. ②·③ (생략) 제29조(수당 등) 각 <u>고등검찰청 검사장</u>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심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등) ① ----- ----- ----- <u>공소청의</u> ----- ----- ----- ----- ----- <u>공소청에</u>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심의 결과 통보 등) ① -- <u>광역공소청장</u>----- ----- <u>공소청의</u>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수당 등) -- <u>광역공소청장</u> ----- ----- ----- --.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u>지방검찰청</u> <u>검사장</u> (지청장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 <u>지방공소</u>
				<u>청장</u> -----

② <u>지방검찰청</u> <u>검사장</u>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u>지방공소청장</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u>지방검찰청</u> <u>검사장</u> 또는 검찰총장은 접수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흠이 있거나	③ <u>지방공소청장</u> -----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의 지급절차) ①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상금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되, 익명으로 보상금지급신청서가 제출되어 지급결정된 경우에는 신청한 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17조(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례) ①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신고를 한 자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의 가지급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당해 사건의 종국처분이전이라도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한 예상 보상금 액수의 10분

-----.

제16조(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 지방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공소청장-----

-----.

②----- 지방공소청-----

-----.

제17조(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소청장-----

의 8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가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각 서식에 준하여 가지급 관련 서류를 작성하되, 가지급금인 사실과 예상보상금 액수, 가지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사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여부 및 보상금 지급액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제18조(보상금지급조서의 작성 등) ①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략)

-----.

-----.

②-----

----- 지방
공소청장 -----

-----.

제18조(보상금지급조서의 작성 등) ①----- 지방공소청장-----

-----.

② (현행과 같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 (신원관리카드의 인계 등) ① (생략) ②법원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좌인을 지정·취소 또는 교체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기소한 <u>검찰청</u> 의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신원관리카드의 인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공소청</u> ----- ----- -----.
제13조 (이의신청 방법) ① (생략) ② <u>지방검찰청검사장</u> (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의신청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u>지방공소청장</u> ----- ----- ----- ----- ----- -----.